

第303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11月22日(火)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물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4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안
4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8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8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 의사일정 상정의 건 8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
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 · 김소남 · 이성현 · 양정례 · 유성엽 · 임동규 · 윤석용 · 정해걸 · 여상규 · 이인기 의원 발의) 9
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 · 백재현 · 정범구 · 추미애 · 최영희 · 김진애 · 장병완 · 김충조 · 홍영표 · 김상희 · 김성곤 · 오제세 · 김영록 · 최재성 · 송민순 · 이찬열 · 박지원 · 박우순 · 노영민 · 안규백 · 강창일 · 이용섭 · 박은수 의원 발의) 9
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 · 손범규 · 원희룡 · 정진섭 · 정병국 · 이범관 · 강성천 · 김성순 · 김용구 · 박대해 의원 발의) 9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6.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 신영수 · 이미경 · 강성천 · 이사철 · 김금래 · 홍영표 · 조원진 · 정진섭 · 김영우 의원 발의) 9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찬열 · 이미경 · 신낙균 · 홍희덕 · 이낙연 · 정동영 · 정범구 · 김영진 · 신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05) 9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찬열 · 이미경 · 신낙균 · 홍희

덕·이낙연·정동영·정범구·김영진·신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19)	9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유선호·유성엽·조영택·오제 세·조배숙·김재균·조정식·박은수·장세환 의원 발의)	9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김금래· 김세연·김학송·김호연·손범규·송영선·윤석용·이화수·정해걸·조원진 의원 발의)	9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강길부·장광 근·안효대·김무성·권영진·최연희·허천·정갑윤·이계진 의원 발의)	9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조진형· 김성조·원유철·정갑윤·최인기·이은재·이명수·김태원·최규식·신지호·장제원·유정 현·김소남·정수성·안경률·김충조·이범래 의원 발의)	9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정갑윤·김정 권·박영선·우제창·김동철·최규성·문학진·손범규·강창일·이찬열·이시종 의원 발의)	9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 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9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유선호·조배 숙·백재현·조영택·유성엽·송민순·김영진·최규성·이미경·정장선·김성순 의원 발의)	9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 상규·박희태·신성범·정갑윤·안형환·조문환·이학재·신건·김효재·조진래 의원 발의)	10
1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윤상일·홍사덕·이명수·이한 성·한기호·서상기·조진래·김태환·변재일·강용석·김혜성·정수성 의원 발의)	10
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 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10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관 의원 대표발의)(이범관·윤석용·황진하·신성범·손범규·박민 식·김용구·김무성·권택기·강성천·정영희·이진복·변웅진·홍희덕·조해진 의원 발의)	10
22. 물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홍재형·양승조·김우남·이낙 연·김상희·박기춘·이종걸·주승용·김영진·강기정·김성순 의원 발의)	10
2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 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10
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이낙 연·유정현·유기준·조경태·박보환·김태원·윤석용·김옥이·김성수 의원 발의)	10
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권선택· 허원제·김정훈·이한성·장윤석·박준선·여상규·홍일표·김태원·권경석 의원 발의)	10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장광근·윤석용·손숙미·안효대·노철래· 정해걸·김낙성·조진래·장제원 의원 발의)	10
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이학재·서상기·홍사덕·김정권·정희 수·김성동·김옥이·김성조·강용석 의원 발의)	10
2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주호영·정양석·김학송·안효 대·김옥이·윤석용·김영우·전현희·김을동·강승규 의원 발의)	10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강창일·주승용·김재 균·이춘석·유선호·김창수·문학진·박우순·이찬열·전병현·조경태·김진표·홍재형·김	

영환 의원 발의)	10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3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안효대 · 김정권 · 이한성 · 유정현 · 김충환 · 김태원 · 손숙미 · 김성동 · 이정선 의원 발의)	10
3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 · 이정희 ·곽정숙 · 홍희덕 · 권영길 · 유성엽 · 김우남 · 강석호 · 최철국 · 강기정 · 정동영 · 조승수 · 김춘진 · 유원일 · 김재운 의원 발의)	10
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김창수 · 권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	10
36.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신영수 · 손범규 · 주호영 · 임동규 · 김성동 · 정옥임 · 김을동 · 김영진 · 이정선 · 이해주 · 최구식 · 권영세 의원 발의)	10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 · 류근찬 · 최인기 · 임영호 · 우윤근 · 김춘진 · 강기갑 · 심대평 · 김창수 · 김용구 · 최철국 · 이명수 · 이인제 · 송훈석 · 이영애 · 박상돈 · 이재선 의원 발의)	10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김용구 · 이명수 · 오제세 · 임영호 · 김낙성 · 김창수 · 변웅전 · 이영애 · 주승용 · 신낙균 · 조배숙 · 김성곤 · 강성천 · 안규백 · 신영수 · 이재선 · 권선택 · 유정현 · 류근찬 · 김재균 · 이낙연 · 박선영 · 정진섭 · 홍희덕 · 손범규 · 정병국 · 홍영표 · 이미경 의원 발의)	10
3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윤상현 · 임해규 · 이한성 · 주성영 · 서상기 · 원희룡 · 유승민 · 이화수 · 이철우 의원 발의)	11
4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찬열 · 이미경 · 신낙균 · 홍희덕 · 이낙연 · 정동영 · 정범규 · 김영진 · 이성남 의원 발의)	11
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 · 권영길 · 강기갑 · 이정희 · 이찬열 · 정동영 · 김재운 · 유성엽 · 유원일 · 원혜영 · 곽정숙 의원 발의)	11
4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유선호 · 이종걸 · 김우남 · 안규백 · 정영희 · 백재현 · 조배숙 · 이석현 · 최종원 · 이성남 의원 발의)	11
4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44.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 · 김성순 · 김용구 · 손범규 · 원희룡 · 이미경 · 이범관 · 이정선 · 정동영 · 정진섭 · 조해진 · 홍영표 · 홍희덕 의원 발의)	11
4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신영수 · 박대해 · 김영진 · 이한성 · 강길부 · 허원재 · 정미경 · 유기준 · 이해봉 · 김성동 · 신상진 · 김을동 · 손범규 의원 발의)	11
4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낙균 · 강창일 · 김영진 · 김용구 · 정동영 · 박주선 · 김동철 · 노영민 · 송훈석 의원 발의)	11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 · 권영진 · 조진래 · 이재선 · 이한성 · 현기환 · 김세연 · 신성범 · 권택기 · 송훈석 · 손숙미 · 원희목 · 안홍준 · 정진섭 · 김태원 · 임해규 · 손범규 · 정태근 · 원희룡 · 정두언 의원 발의)	30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재 · 황영철 의원 발의)	30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김성수 · 윤영 · 김우남 · 정해결 · 손숙미 · 정미경 · 박준선 · 노철래 · 이춘식 · 이사철 · 원유철 의원 발의)	30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30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미경 · 신낙균 · 김용구 · 김영록 · 정동영 · 조정식 · 문학진 · 강창일 · 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65) 30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윤석 · 강기정 · 김영록 · 김영진 · 안규백 · 이찬열 · 김동철 · 박기춘 · 정범구 · 송민순 · 전해숙 · 강창일 · 박영선 · 김유정 · 최규성 · 서종표 · 최인기 · 노영민 · 주승용 · 최재성 · 백원우 · 박우순 · 김희철 · 김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87) 30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5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30

5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5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30

5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김상희 의원 외 82인 발의) 30

5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두아 의원 대표발의)(이두아 · 이재선 · 신지호 · 나성린 · 조원진 · 조전혁 · 신상진 · 이명수 · 강용석 · 구상찬 의원 발의) 30

6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여상규 · 권영세 · 유선호 · 황우여 · 이한성 · 윤상현 · 김금래 · 김옥이 · 허원제 의원 발의) 30

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30

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 · 이명규 · 정두언 · 박보환 · 김정권 · 김무성 · 이정선 · 서상기 · 김학송 · 손범규 · 김소남 · 나성린 · 현기환 · 이한성 · 원희목 · 권영진 · 정의화 · 윤상현 · 김옥이 의원 발의) 30

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김영록 · 김혜성 · 송민순 · 김춘진 · 장세환 · 김성곤 · 유선호 · 김우남 · 전해숙 의원 발의) 30

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6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30

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 · 신낙균 · 유선호 · 양승조 · 조영택 · 조정식 · 이종걸 · 문학진 · 홍희덕 · 유성엽 · 유원일 · 김성곤 · 김재운 · 이미경 · 조배숙 · 김충조 · 김부겸 · 김선동 · 이낙연 · 김진애 · 장세환 · 신건 · 박우순 · 박주선 · 김영진 · 서종표 · 안민석 · 조승수 · 권영길 · 김학재 · 홍영표 · 이정희 · 오제세 · 강창일 의원 발의) 31

6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손숙미 · 김옥이 · 유성엽 · 권영진 · 손범규 · 이두아 · 오제세 · 이정선 · 조진래 · 임동규 · 홍정욱 · 허태열 의원 발의) 31

6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고승덕 · 강명순 · 신건 · 송민순 · 정수성 · 정병국 · 이한성 · 이인기 · 배영식 · 이명수 의원 발의) 31

6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김태원 · 김소남 · 강용석 ·

- 김정권 · 여상규 · 신지호 · 강길부 · 김학송 · 손숙미 의원 발의) 31
7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 · 김호연 · 이한성 · 윤석용 · 박민식 · 강기갑 · 정미경 · 손숙미 · 이은재 · 안효대 · 김유정 · 김충조 · 홍정욱 · 김혜성 의원 발의) 31
7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 이춘식 · 윤진식 · 김형오 · 주광덕 · 유정현 · 임해규 · 강성천 · 이은재 · 김호연 의원 발의) 31
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유선호 · 강창일 · 유성엽 · 백재현 · 박주선 · 김진표 · 김영록 · 조경태 · 오제세 의원 발의) 31
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31
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 · 박영선 · 이낙연 · 홍희덕 · 강기갑 · 박은수 · 정상선 · 조배숙 · 유선호 · 최영희 · 조정식 · 김상희 · 정세균 · 김진표 · 홍영표 · 이춘식 · 김학재 · 장세환 · 김성곤 · 정동영 · 안규백 · 최재성 · 송민순 · 서종표 · 양승조 · 백재현 · 장병완 · 김충조 · 노영민 · 김영진 · 조승수 · 이찬열 · 권영진 · 조영택 · 원혜영 · 김진애 · 권영길 ·곽정숙 · 정진섭 · 강성천 · 박상천 · 유원일 · 손범규 · 이범관 · 김성순 · 김용구 의원 발의) 31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7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임두성 · 유성엽 · 김정권 · 손범규 · 이한성 · 김충환 · 고승덕 · 김성수 · 윤상현 의원 발의) 31
7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 · 김학용 · 김영록 · 성윤환 · 정해걸 · 이사철 · 이철우 · 김호연 · 주성영 · 김우남 · 나성린 · 홍일표 · 김소남 · 여상규 · 박보환 · 김성희 · 안효대 · 윤영 · 유재중 · 이병석 · 김성수 · 차명진 · 유일호 · 이화수 의원 발의) 31
7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 · 이정선 · 유정현 · 박준선 · 김옥이 · 김용구 · 정미경 · 김소남 · 손범규 · 신영수 의원 발의) 31
79.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 · 강성종 · 강창일 · 김성곤 · 김영진 · 김재윤 · 박은수 · 문학진 · 유선호 · 유원일 · 이낙연 · 이용섭 · 조정식 · 전해숙 · 추미애 · 최종원 · 홍영표 · 홍희덕 의원 발의) 31
8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8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 · 손범규 · 이화수 · 김태호 · 김태환 · 김소남 · 이철우 · 박대해 · 허천 · 정옥임 의원 발의) 31
82.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미경 의원 발의)(이미경 의원 외 86 인 발의) 31
8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신영수 · 홍영표 · 강성천 · 이정선 · 이종혁 · 박대해 · 이애주 · 강길부 · 강석호 · 안홍준 · 고승덕 의원 발의) 31
8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 · 성윤환 · 김창수 · 변재일 · 강운태 · 전병헌 · 김재균 · 서갑원 · 김동철 · 안민석 · 유성엽 · 최철국 · 박은수 · 김춘진 · 김상희 · 김금래 · 최재성 · 박선숙 · 이해봉 의원 발의) 32
8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 · 손범규 · 김소남 · 박준선 · 장세환 · 이화수 · 김금래 · 김옥이 · 이정선 · 황영철 의원 발의) 32
8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 · 최철국 · 노영민 · 박주선 · 김재윤 · 전병헌 · 김동철 · 박선숙 · 양승조 · 유원일 의원 발의) 32
8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 · 강기갑 · 곽정숙 · 권영길 · 유원일 · 이미경 · 이정희 · 조승수 · 최문순 · 홍영표 의원 발의) 32
8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강명순 · 김호연 · 김성수 · 유재중 · 김성태 · 최경희 · 이애주 · 원희목 · 이정선 · 정영희 의원 발의) 32
8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강기정 · 강창일 · 김상

회 · 김재균 · 양승조 · 이춘석 · 유선호 · 유성엽 · 조영택 · 최종원 의원 발의) 32

9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 · 전해숙 · 김성곤 · 이해봉 · 김재윤 · 유성엽 · 김효재 · 김정훈 · 이인기 · 고흥길 · 윤석용 · 이석현 · 변웅전 · 신상진 의원 발의) 32

9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남경필 · 이한성 · 이춘식 · 김선동 · 손범규 · 박대해 · 손숙미 · 정두언 · 강용석 · 김태호 · 이두아 · 구상찬 · 이윤성 · 김정훈 · 조진래 의원 발의) 32

9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 · 김우남 · 강창일 · 양승조 · 김종률 · 홍재형 · 전병현 · 이윤석 · 유성엽 · 우제창 · 송민순 · 강기정 · 백원우 · 전현희 · 전해숙 · 김충조 · 박은수 · 박기춘 · 김효재 · 김영진 · 김진표 의원 발의) 32

9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 · 장세환 · 양승조 · 김충조 · 김희철 · 최영희 · 최문순 · 광정숙 · 김성순 · 우제창 · 정하균 · 이성남 · 김성곤 · 김종률 의원 발의) 32

9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김성조 · 신상진 · 서상기 · 이한구 · 조진형 · 권경석 · 허천 · 이낙연 · 우윤근 · 노영민 · 장윤석 · 정희수 · 양정례 · 김충조 · 허태열 · 이한성 · 강석호 · 구본철 · 정의화 · 정갑윤 · 김일윤 · 김학송 · 안상수 · 이성현 · 이인기 · 김태환 · 김동성 · 백성운 · 정하균 · 박준선 · 홍사덕 의원 발의) 32

9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 · 권영길 · 강기갑 · 광정숙 · 김재윤 · 김성수 · 이정희 · 최문순 · 문희상 · 김성곤 · 송훈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819) 32

9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김동철 · 안민석 · 조영택 · 박영선 · 김부겸 · 김영진 · 오제세 · 전병현 · 홍영표 · 양승조 · 김재윤 · 이미경 · 정동영 · 이종걸 · 박기춘 · 김유정 · 주승용 · 김진표 · 김진애 · 천정배 · 문학진 · 김성곤 · 이낙연 · 박은수 · 이찬열 · 김재균 의원 발의) 32

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강창일 · 권선택 · 김성곤 · 김우남 · 박선숙 · 박은수 · 백재현 · 송민순 · 이미경 · 이석현 · 이용섭 · 이찬열 · 조승수 · 조영택 · 최문순 의원 발의) 32

9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 · 강용석 · 권영진 · 남경필 · 서병수 · 손숙미 · 원희룡 · 유기준 · 이진복 · 이한성 의원 발의) 32

9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 · 강기갑 · 광정숙 · 권영길 · 김상희 · 이미경 · 이정희 · 정동영 · 조승수 · 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88) 32

10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 · 우윤근 · 이춘석 · 유선호 · 박선숙 · 유원일 · 홍희덕 · 박은수 · 조영택 · 이찬열 · 강기갑 · 김영진 · 홍영표 · 원혜영 · 김상희 · 주승용 · 이용경 · 이낙연 · 김진애 의원 발의) 32

1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32

10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김상희 의원 외 82인 발의) 33

10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33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윤광식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순 입법조사관, 수고했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김성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법률안 중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이 아닌 경우 이를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환경부 소관 및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들은 예산 부수 법안은 아니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한편 의사일정 제4항 또 제46항, 제52항 및 제79항의 경우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법률안의 상정시기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간사 간 협의의 통해 오늘 회의에 같이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는 오전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소관 법률안을 모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임두성 · 김소남 · 이성현 · 양정례 · 유성엽 · 임동규 · 윤석용 · 정해결 · 여상규 · 이인기 의원 발의)
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 · 백재현 · 정범구 · 추미애 · 최영희 · 김진애 · 장병완 · 김충조 · 홍영표 · 김상희 · 김성곤 · 오제세 · 김영록 · 최재성 · 송민순 · 이찬열 · 박지원 · 박우순 · 노영민 · 안규백 · 강창일 · 이용섭 · 박은수 의원 발의)
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 · 손범규 · 원희룡 · 정진섭 · 정병국 · 이범관 · 강성천 · 김성순 · 김용구 · 박대해 의원 발의)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

원 대표발의)(조해진 · 신영수 · 이미경 · 강성천 · 이사철 · 김금래 · 홍영표 · 조원진 · 정진섭 · 김영우 의원 발의)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찬열 · 이미경 · 신낙균 · 홍희덕 · 이낙연 · 정동영 · 정범구 · 김영진 · 신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05)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찬열 · 이미경 · 신낙균 · 홍희덕 · 이낙연 · 정동영 · 정범구 · 김영진 · 신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19)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유선호 · 유성엽 · 조영택 · 오제세 · 조배숙 · 김재균 · 조정식 · 박은수 · 장세환 의원 발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 · 김금래 · 김세연 · 김학송 · 김호연 · 손범규 · 송영선 · 윤석용 · 이화수 · 정해결 · 조원진 의원 발의)
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 · 강길부 · 장광근 · 안효대 · 김무성 · 권영진 · 최연희 · 허천 · 정갑윤 · 이계진 의원 발의)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조진형 · 김성조 · 원유철 · 정갑윤 · 최인기 · 이은재 · 이명수 · 김태원 · 최규식 · 신지호 · 장제원 · 유정현 · 김소남 · 정수성 · 안경률 · 김충조 · 이범래 의원 발의)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정갑윤 · 김정권 · 박영선 · 우체창 · 김동철 · 최규성 · 문학진 · 손범규 · 강창일 · 이찬열 · 이시중 의원 발의)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김창수 · 권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유선호 · 조배숙 · 백재현 · 조영택 · 유성엽 · 송민순 · 김영진 · 최규성 · 이미경 · 정장선 · 김성순 의원 발의)

-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박희태·신성범·정갑윤·안형환·조문환·이학재·신건·김효재·조진래 의원 발의)
- 1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윤상일·홍사덕·이명수·이한성·한기호·서상기·조진래·김태환·변재일·강용석·김혜성·정수성 의원 발의)
- 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관 의원 대표발의)(이범관·윤석용·황진하·신성범·손범규·박민식·김용구·김무성·권택기·강성천·정영희·이진복·변웅전·홍희덕·조해진 의원 발의)
- 22. 물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홍재형·양승조·김우남·이낙연·김상희·박기춘·이종걸·주승용·김영진·강기정·김성순 의원 발의)
- 2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 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이낙연·유정현·유기준·조경태·박보환·김태원·윤석용·김옥이·김성수 의원 발의)
- 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권선택·허원제·김정훈·이한성·장윤석·박준선·여상규·홍일표·김태원·권경석 의원 발의)
-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장광근·윤석용·손숙미·안효대·노철래·정해걸·김낙성·조진래·장제원 의원 발의)
- 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이학재·서상기·홍사덕·김정권·정희수·김성동·김옥이·김성조·강용석 의원 발의)
- 2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주호영·정양석·김학송·안효대·김옥이·윤석용·김영우·전현희·김을동·강승규 의원 발의)
-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강창일·주승용·김재균·이춘석·유선호·김창수·문학진·박우순·이찬열·전병현·조경태·김진표·홍재형·김영환 의원 발의)
-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안효대·김정권·이한성·유정현·김충환·김태원·손숙미·김성동·이정선 의원 발의)
- 3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이정희·곽정숙·홍희덕·권영길·유성엽·김우남·강석호·최철국·강기정·정동영·조승수·김춘진·유원일·김재운 의원 발의)
- 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 36.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신영수·손범규·주호영·임동규·김성동·정옥임·김을동·김영진·이정선·이애주·최구식·권영세 의원 발의)
-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류근찬·최인기·임영호·우윤근·김춘진·강기갑·심대평·김창수·김용구·최철국·이명수·이인제·송훈석·이영애·박상돈·이재선 의원 발의)
-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김용구·이명수·오제세·임영호·김낙성·김창수·변웅전·이영애·주승용·신낙균·조배숙·김성곤·강성천·안규백·신영수·이재선·권선택·유정현·류근찬·김재균·이낙연·박선영·정진섭·홍희덕·손범규·정병국·홍영표·이미경 의원 발의)

- 3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 · 윤상현 · 임해규 · 이한성 · 주성영 · 서상기 · 원희룡 · 유승민 · 이화수 · 이철우 의원 발의)
- 4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이찬열 · 이미경 · 신낙균 · 홍희덕 · 이낙연 · 정동영 · 정범구 · 김영진 · 이성남 의원 발의)
- 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 · 권영길 · 강기갑 · 이정희 · 이찬열 · 정동영 · 김재윤 · 유성엽 · 유원일 · 원혜영 ·곽정숙 의원 발의)
- 4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유선호 · 이종걸 · 김우남 · 안규백 · 정영희 · 백재현 · 조배숙 · 이석현 · 최종원 · 이성남 의원 발의)
- 4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 · 김성순 · 김용구 · 손범규 · 원희룡 · 이미경 · 이범관 · 이정선 · 정동영 · 정진섭 · 조해진 · 홍영표 · 홍희덕 의원 발의)
- 4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신영수 · 박대해 · 김영진 · 이한성 · 강길부 · 허원재 · 정미경 · 유기준 · 이해봉 · 김성동 · 신상진 · 김을동 · 손범규 의원 발의)
- 4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신낙균 · 강창일 · 김영진 · 김용구 · 정동영 · 박주선 · 김동철 · 노영민 · 송훈석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성순 의사일정 제1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임두성 의원, 이미경 의원, 이정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홍영표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박준선 의원, 윤영 의원, 권경석 의원, 박기춘 의원, 이명수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김을동 의원, 이명수 의원, 이범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명수 의원, 손범규 의원, 박대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윤영 의원, 조원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조해진 의원, 노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 강기갑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 김낙성 의원, 김용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홍희덕 의원,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홍영표 의원

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조해진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전부 다 서면으로 대체하지요.

○**위원장 김성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서도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단말기 자료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항을 대표발의하신 임두성 의원께서는 2010년 9월 9일에 의원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0항, 제17항, 제28항, 제29항, 제32항 및 제43항, 이상 7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7개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로 변경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녹색매장 지정대상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둘째 자동차용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 경유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첨가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기기 운영·관리 주체에 국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신속한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둘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비점오염원의 관리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지자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둘째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규정을 신설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오염토양의 불법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계·인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토양 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 자연환경 전국조사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상 및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신속히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환경예산이 2012년에 5조 원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환경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안들도 원안대로 심의·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환경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46건 법률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동 법률안이 환경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의 협의를 의제하고 있으나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환경성 평가를 거칠 충분한 시간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환경성 평가 의제처리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의원님 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시기와 부칙상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임두성 의원님 안 중 환경성질환예보제는 그 실효성을 생각할 때 신중한 재검토가 요청됩니다. 이미경 의원님 안은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법의 기본이념에 추가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녹색구매지원센터에게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 재정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안은 연료조절시설의 위탁을 위한 실제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부안 중

행정기관이 직접 설치하는 중소 사업장 자동측정기기의 운영비를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나 현재 자비로 운영 중인 경우에는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준선 의원님 안은 대상 저수지가 한 곳에 불과하여 법규의 일반성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정부안은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위탁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계기금의 사용 용도와 배치되는 것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윤영 의원님 안은 수도사업의 부채액이 1조 19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수도요금 할인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진 의원님 안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이 기술적이어서 현행처럼 환경부령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의 경우에 민간업체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 지 채 2개월이 안 되어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부터 32항까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노영민 의원님 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에 대해 찬반 의견이 혼재된 상황이고, 정부안 중 생태관광의 지정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태관광 인증제도와 중복성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의 경우 노영민 의원님 안과 병합 심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이중 부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신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은 산림청에서 식물원 업무의 중복을 이유로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유재산의 특례를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에 따른 별표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주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리·선별업 신설 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강성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신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일부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거나 타 법률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체계 자구의 수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6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반입부담금의 신설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홍희덕 위원 1항에……

○위원장 김성순 예, 홍희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희덕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지금……

○위원장 김성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제정안은 환경성평가 인허가에 대한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33조를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서에 대한 협의도 의제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건어 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뜩이나 우수한 생태 환경을 자랑하는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산림이나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절차를 간소화시키면 평창 올림픽이 최악의 반환경 올림픽으로 낙인찍히고 환경의 시대에서 추세에 뒷걸음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환경부나 우리 환노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최소한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래서 지금 홍희덕 위원님 발언하신 그런 요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예, 그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의견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6항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장관님, 5항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6월부터 회부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안 제17조의3제4항은 지자체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 시 지자체 소관의 대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이 어려운 지자체에게 부득이한 경우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강성천 위원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정부안대로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지원하면 그만큼 지자체 수입이 줄어들어 향후 지자체와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 대책은 됩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는 국고를 지원해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지원비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지자체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법개정을 위한 부처 의견 수렴 시에 지자체나 행안부에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과 제35조(대부료의 감면) 조항을 보면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행안부하고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이나 또 대부료 감면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또 다른……

○홍영표 위원 저……

○위원장 김성순 예, 홍영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제67조의2항 및 제67조의3항을 보면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갖는데, 우선 고유 홍보사업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단체가 왜 필요합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 환경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 교육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 환경 보전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서 밀접한 그런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 또 우리 국민 인식 제고 등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영표 위원 사실은 교육이나 홍보사업의 성격이나 필요성들을 보면 이게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도 위탁하거나 대행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도 현재 굉장히 많고요, NGO들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면, 저희들한테 주신 이 자료 있지요, 법안 설명 자료? 이것을 뒤에 보면, 40페이지 보면 한국수생태복원협회, 이미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환경부 전직 관료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통상적인 수범이예요. 장관님이 아셔야 되는 게 환경부 전직 관료들 자리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누가 이 자료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이 단체가 무슨 연관이 있어요?

법 만들기도 전에 이런 단체 이미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이 법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무슨 한국동식물원 협회도 만들자, 도대체…… 환경부 산하에 이런 법적 근거를 갖는 단체에 대해서 리스트를 전부 다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환경부가…… 다른 부처도 정부에서 통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위인실관 식으로 단체 만들어서 법적 근거 만들어 주고 정부 예산 지원하고, 이것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다른 NGO 단체들 활동 잘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지원해서 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따로 전직 관료들 자리 만들어 주는 이 협회를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유사한, 법적 근거를 갖고 또 그 법적 근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환경부 산하의 전체 협회 명단을,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협회 명단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유영숙** 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홍영표 위원** 그리고 하여튼 보면, 여기도 보면 벌써 두 개 만들자는 겁니다. 또 보면, 뭐니까? 한국동·식물원협회도 만들자, 이래서 뭐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 정부조직이 저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협회들 만들어서 협회에다가 예산 주면서 말이죠, 집행하게 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거 반대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명단을 좀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동물원수족관협회 또 식물원수목원협회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런 것 만들 때 다 그럴싸하게…… 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다 만들지요, 뭐 잘못하겠다고 만듭니까? 그래서 아

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 있지요? 이게 지금 오늘 36번일 겁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꼭 이게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늘 상정을 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우선 지금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해서 인근 주민들, 특히 인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 이 기본적인 문제도 제대로 환경부가 관리·감독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조항일 수도 있지만 악취라든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 또 소음, 먼지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제안한 거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반입부담금은, 솔직히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인천에서는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뭐 상수원 지역에다가. 마찬가지로 이 폐기물 반입부담금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폐기물 반입부담금 신설에 관해서는 지금 예를 드신 것처럼, 물이용부담금 같은 그런 걸 예를 드셨습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의 경우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질관리·입지 규제를 받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이미 유사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저희는 폐촉법이라고 하는데—에 따라서 환경영향지역에 반입수수료를 재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 제시한 부담금 사용용도는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사업내용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체계상 맞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갈등해결에도 오히려 더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사법 제3조4항 '수도권매립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가 노력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공사의 책무 조항 신설에는 저희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잠깐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위에서 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폐기물 반입부담금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그 수익의 일부를, 지금 주변지역 5km입니까? 5km 반경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또 쓰레기 반입 과정에서 환경문제들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새롭게 해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할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부담금 신설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소위에서 충분히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이정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장관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항입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지금 다른 것도 문제지만, '민간조사단체를 배제하고 공공단체에서 공신력을 확보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를 배제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의 제약이 있겠고요.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민간기관을 배제하면?

○**환경부장관 유영숙** 아무래도 민간단체들의 그

런 불만이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정선 위원**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정선 위원** 지금 문제가 된다고 이 법안에서는, '민간기관 조사가 전문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된다. 좀 국민들을 속인다. 악용된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영향조사 대행자에 대해서 저희가 연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악용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환경영향심사위원회에 기술적으로 심사를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 환경영향심사위원회가 조금 더 정확한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령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가축 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이 미치는 영향조사에 관해서는 즉각 환경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정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에 어떤 명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4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토해양부의 개발사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환경부의 대처에 관한 주문인 것 같은데…… 환경부는 아무래도 안전한 먹거리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에 관한 이런 부분인데, 아마 먹거리는 농림식품수산부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법안에서는 일단은 '환경부나 농림식품부가, 농림부가 대처를 같이 해야 된다. 서로 의견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농림식품부의 입장은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한다면 수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농림부의 경우는 건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직접 농림부로부터 의견을 받

은 사례도 있고 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양 업무나 이런 거는 주로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러나 그동안 농림부로부터도 직접 의견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공유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게 굳이 법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국민들의 먹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바로 공유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의견을 또 듣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같은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법으로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겠으나 그렇게 될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즉각각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선 위원 제 생각은 뭐 법을 만들어서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처가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액션이고요. 법 이전에 부처가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는 공동으로 국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 공통적으로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우선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게 몇 항이나 하면, 26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에 관한 건데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못 하는 지자체가, 뭐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지자체마다 수도 분야 재

정자립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역시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정선 위원 물론 지자체의 자립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건 존중되어야 될 것이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어려운 시설의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좀 책임져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권으로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자체를 존중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건의하시고 임의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그런 지원은, 그러니까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다음 조해진 위원님 하십시오.

○신낙균 위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우려가 지적되었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겁니다.

동 개정안 제53조 내지 56조에 따르면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신낙균 위원 그런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받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그런 업무, 그런 것을 지자체에 이양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업무까지 그걸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것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인데요. 그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에 두 개 이상의 시도 지역에 걸친 지역 그런 문제, 서로 과도하게 지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정되어야 할 곳이 지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지는 점,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비점오염원 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업무 이양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본 내용은 2009년도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점오염 관리를 지자체에 모두 이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부처 합동 추진이 필요한 업무도 있고 또는 예산 투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방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저희 환경부에서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역 전체 수질에 관한 고려가 없이 시군 단위로 비점관리지역을 지정·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반대를 했듯이 비점오염관리는 광역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보전 관리에 대해서 교육·홍보, 국제협력 그런 수행은 필요하겠지요.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단체까지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더군다나 국제협력 업무를 이 단체에 부여하는 것은 근거 규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체의 설립 필요성과 단체의 업무 영역에 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예.

○**위원장 김성순** 그 문제도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해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 수도권매립지공사 전용도로 유지 관리 비용 용도로 우리 공사에서 반입수수료 수입을 가지고 인천시하고 김포시에 한 300몇억인지 500몇억인지 그동안 누적 지원을 했는데 전용도로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많았다, 전용이 아니고 일반 노선버스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지원 금액이 얼마나 지급됐고, 그것이 어떻게 쓰였고, 원래 지원 목적인 전용도로 유지 관리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우선 금액은 매년 한 100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내용은 인천시를 통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괜찮으시면 해당 국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자원순환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돈을 인천시에 주게 되면 인천시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 매립지공사 관련 법안 개정안의 내용에 보면 반입부담금의 사용 용도 중의 하나로 “전용도로 유지 보수 및 관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조해진 위원**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될 경우에 기존에 지원해 오던 금액 거기에다가 이것을 더 추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폐지하고 이것을 별도로 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주민지원금은 따로 나가게 되겠고요, 도로지원금은 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조해진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법 개정안에 보면 반입부담금을 걷어 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여기에 다시 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조해진 위원** 그럼 기존의 수수료 수입 중에 매년 100억가량 지원해 오던 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합쳐져서 더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둘 중의 하나는 폐지하게 되는 건지……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정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하나로 통합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래서 저희 환경부 입장은 새로운 법을 또 만드는 것보다는 현행법을 좀 더 보강해서 지역주민들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해진 위원** 반입수수료하고 반입부담금하고 성격 구분이 되나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현재는 반입수수료가 한 1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것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현재 공사가 징수하고 있는 반입수수료하고 신설되는 반입부담금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환경부장관 유영숙** 부담금의 경우는 기재부하고 또다시 기본법, 그러니까 부담금 기본법에 따라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조해진 위원** 이게 시행이 됐을 때 폐기물 배출업체들에게 대략 얼마 정도, 물론 부담금 비율이 정해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될지예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없는 상태시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아직은 그런 검토를 한 바 없습니다.

○**조해진 위원** 법이 되었을 때 수도권매립지공사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전국 곳곳에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수수료 받고 할 텐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같은 목적으로 주민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등등 해 가지고 새로운 항목을 요청할 가능성은 없을까

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담금 도입을 요구할 경우 저희가 어디 한 곳만 해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들어서 요구를 할 경우 저희가 또 어려움이 생기고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여러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원 방안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어쨌든 간에 매립지 주변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환경상의 여러 가지 불편 또는 고통, 피해 이런 것들을 환경개선이나 주민지원을 통해서 해소하고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은 또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부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법안의 형태든지 기존의 수수료를 더 늘려 가지고 지원 규모를 늘리든지 될 하든지 하여튼 그 대책을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니까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같이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한 2~3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환경공단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제가 들은 거로는 공단 설립 목적을 추가한 것, 그 중에 기후변화 대응 업무, 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 지속가능 발전 관련 업무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경우에 다른 부처, 이것은 사실 웬만한 정부부처에 다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미션인데 다른 부처의 업무 목적, 그러니까 업무 취지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를 들면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서도 기후변화 관련된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또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환경부가 총괄적인 부처로서 논의되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처의 업무 취지에 이런 규정이 들어갔다고 해서 각 부처가 다른 부처 업무까지 망라해 가지고 다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또 자기 해당 부처 업무가 새로운 국정 방향에 맞춰서 다소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타 부처가 하고 있는 일까지 이중, 삼중으로 하고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것을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리 환경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오래 전부터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특히 국토부하고 일부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2009년 4월 국무총리실 조정으로 해서 ‘지방하천 관리사업 추진관련 합의서’라고 해서 환경부의 경우는 생태하천의 생태계 회복 위주로 업무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하천의 유지 보수 위주로 하는 것으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조해진 위원** 국토부도 생태 복원의 필요성은 느껴서 제가 볼 때는 국토부도 단순 치수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약간 친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노력하려는 것은 맞는데, 그 방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환경부 업무하고 완전히……

.....

중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유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해진 위원** 국토부가 너무 민감하게, 같은 방향에서 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면 되는 거고, 또 엄연하게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잘 좀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안건 11항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법규의 일반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해당 저수지의 요건이 “총 저수용량 1000만 m³,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 거주 인구가 1만 명이 상일 것”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게 전국의 수백 개 저수지 가운데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 때 깊이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맞는 저수지는 현재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특정 저수지만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좀 더 보편적으로 전국 저수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손범규 위원** 손범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 ‘하나의 저수지밖에 적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처분이 법이 아니지 않나’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기준을 재설정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방안을 얘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숫자를 늘리고 기준을 다시 정해 가지고 박준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그 법률대로 더 많은 저수지를 적용하게 하시겠다고 그런 뜻인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말씀드린 내용은, 박준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특정 저수지만을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의 저수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저수지가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박준선 의원의 법 적용을 받도록 여러 개를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

○**손범규 위원** 국장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박준선 의원님……

○**손범규 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지만 그 법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손범규 위원** 박준선 의원께서 오죽하면 그런 법을, 법률전문가인데 처분적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는지를 생각해 보고 국회의원의 입장이라든지 지역의 사람들을 생각해 가지고 거기 뭐 좀 지원한다든가 중재를 한다든가 그런 안을 환경부에서 만들었다는데 그런 것 있어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구체적으로 대상 저수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손범규 위원** 박준선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 무조건 처분적 법률이라고만 비난하고 그렇게 아니라 뭐 좀 대책을 세워 보세요.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시고요.

방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담금 문제 있지요? 쓰레기 처리 부담금.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손범규 위원** 그 부담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부담금을 신설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법안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정부가 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어떤 환경과피를 수반하는 혐오시설, 주민 혐오시설 때문에 환경과피가 수반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를 보니까 지원하겠다, 그래서 수수료도 부족하니까 부담금 건겠다 이런 차원이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정부 입법 41항은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가 입법한 안은 관계행정기관 협의기관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손범규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의 전체적인 취지가 뭐겠어요? 피해보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맞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것과 똑같은 취지로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부담금 신설 검토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홍영표 의원님께서 새롭게 발의하신 법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면 이제 정부는 그런 걸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혐오시설이라는 게 폐기물 처리시설만 혐오시설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만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오물 처리시설도 있고 화장장도 있고 공동묘지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 ‘당인리 발전소’ 있지요, 그게 마포구에 위치한 건데 그게 과거 이름대로 ‘당인리’라고 그러합니다. 경기도 고양군 당인리, 당인리 발전소도 혐오시설이다. 지금 다 혐오시설이라는 게 종류가 다양해요.

그리고 전번에 팔당저수지 물, 그 맑은 물을 서울시민이 먹으니까 맑은 물 부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금이라는 것들이 다 뭐냐 하면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대책을 세워 주자는 겁니다.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지역에 혐오시설이 없고 다른 지역에 있는 혐오시설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변의 인천주민들이 매립권을 더 이상 인정 안 하겠다, 매립권 인천시에서 가져가겠다 하면 아주 손가락질하고 말이지. 지금 서울시 태도도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로 보고 말아야.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의 의원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나 이겁니다.

그러면 환경부로서는 뭘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종 환경오염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혐오하는 혐오시설, 기피시설을 전반적으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어떻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걸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비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이렇게 딱 한정된 주제만 가지고 하지 말고 혐오시설 전체를 망라하고 환경과 관계된 모든 시설을 망라해 가지고 일반적인 법 접근을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절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악취나 소음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혐오시설도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범규 위원** 저 20초만 더 주십시오.

이제 국민들이 자기 것, 자기와 관련된 것 무상으로 해 주고 하니까 열광하고…… 이러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자기 말고 남 것, 이웃 것, 자기 때문에 피해 보는 이웃, 자기 때문에 피해 보는 인근 주민, 서울시 때문에 피해 보는 경기도, 서울시 때문에 피해 보는 인천, 이것 생각해 가지고 ‘부담금 더 걷어라’, ‘세금 좀 더 내라’ 이렇게 정부가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건 뭐 좋은 것만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말아야. 나쁜 건 이웃한테 그냥 밀어 넘겨 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는…… 이런 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이게 무슨 같은 국가입니까? 국민이 자기 말고 남도 생각할 줄 알아야지.

정부가 이걸 나서야 돼요, 이제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저희 정부는 모든 국민의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수도권매립지공사에만 부담금 자꾸 생각하지 말고 화장장, 공동묘지, 분뇨처리장 등 때문에 피해 보고 있는 대도시 주변의 주민들, 어떻게 그걸 지원해 줄 건지 고민하십시오. 거기도 전부 부담금 다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린벨트, 재산 40년씩 묶어 놓고 10원짜리도 하나 안 줘 가지고 분개하고 있는 국민들, 맑은 공기 부담금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맑은 공기 부담금.

그 사람들이 희생하는 이유로 맑은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까, 대도시에서? 그러면 그것도 부담금 만들어서 해야지요. 과감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시설만 가지고 처분적으로, 처분적 법률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처분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만 하다 보면…… 아까 장관께서 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어떻게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봐 가지고 국민 전체가, 자기가 서울시 같으면 그 주변 또 대구시 같으면 주변, 전국이 여러가지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해 가지고 그걸 통일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조금 조금, 자꾸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하다가 결국 다 망치는 거예요. 저항만 되고, 아시겠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저희 정부는 전체 국민의 건강이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환경부는 현재의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후세들을 생각을 하는 것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손범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조금 흥분할 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

김용구 위원님, 하실 거예요?

○**홍영표 위원** 제가……

예,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김성순** 먼저 하시고요, 한 차례.

○**金容九 委員** 장관님 처음 취임할 적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건 꼭 중소기업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金容九 委員** 환경부에서도 환경에 관계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 정책을 실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는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거나 어떤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는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잘하면 얼마든지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 해 달라고 처음부터, 제가 부임할 적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부담금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원칙은 정부에서 재황용이 안 되는 데는 폐기물부담금을 매기고 또 구제방법으로서 EPR이나 또 자발적 협약 체결해 가지고 면제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경우에는 무조건 폐기물부담금을 해 놓고 면제를 받으려면 자발적인 협약을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발적 협약이라는 것도 한시적이거든요. 하나의 정책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이 자발적 협약을 하는 데는 그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요건을 충족을 못

하니깐 이 사람들은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실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업체가 약 3867개나 되는데 이 중에 자발적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게 341개로서 8.8%에 불과한데, 이 자발적 협약을 하는 업체들이 다 대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삼성전자, LG전자, 동양매직, 웅진코웨이, 금호석유화학, SK케미칼 등 48개 기업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대기업 해 주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3867개 중에 34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자발적 협약을 못 하니깐 이걸 면제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생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이걸 면제를 해 버리면 그만인데 왜 행정적으로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은 이런 수혜를 보는데 중소기업은 못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저 다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폐기물 관계를 보면 법률적인 자의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질서가 안 잡히고 있다, 또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관서에서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잘하면 정부 부담도 없고 어느 누구 손해 보는 사람도 없이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어떻게, 하셔야겠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말씀드릴까요?

○**金容九 委員** 예.

○**환경부장관 유영숙** 우선 플라스틱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위원님께서 실제 제품을 가지고 오셔서 시연하셨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부담금을 매기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많이 고려를 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 받아들여서 앞으로, 자발적 협약이 현재는 아무래도 대형 배출하는 그런 데라 대기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주력제품을 위주로 해서 자발적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

다.

전체 저희가 플라스틱 제품들을 살펴보면 총 190만 t 중에서 EPR로 되는 것이 50만 t이고 자발적 협약으로 해서 부담금이 제외되는 것이 82만 t으로 현재 부담금을 내는 부분이 약 20%에서 25%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두 다 플라스틱 부담금을 없애게 될 경우 그동안 재활용했던 그런 정책이 느슨해지게 돼서 재활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물론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은 있겠습니다만 플라스틱 제품들이 재활용되고 또 이런 것에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가능한 좋은 방법으로 마련을 해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검토를 했고 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러면 검토가 잘못 됐지요.

왜 그런가 하면 법 12조에 보면 (폐기물부담금)에 나와 있거든요. 첫째, 유해물질·유독물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60% 이상 재활용이 되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제외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금 다 적용하고 있잖아요. 적용을 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면제받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근원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걸 왜 묶어 놓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하면 행정적으로 번거롭지도 않고 이런 자발적 협약도 체결 안 해도 되는데, 장관님 검토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더 자세히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고……

○**위원장 김성순** 소위에서 또 토론을……

○**金容九 委員** 다음에 이 문제를 좀 제가 심도 있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그렇게……

○**위원장 김성순** 예, 김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영표 위원님 보충토론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예, 홍영표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산하단체라고 할까요, 하여튼 환경부와 관련된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수질과 수생태계 단체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국폐기물업연합회라는 것 알고 계세요?

누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전국폐기물업연합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이름은 들었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홍영표 위원** 예.

이 단체의, 제가 하나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비지원 3억을 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자, 아시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보십시오.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위원님, 한국폐기물협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홍영표 위원** 하여튼 폐기물업연합회,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폐기물업연합회가 아니라 폐기물협회는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폐기물협회입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홍영표 위원** 한국폐기물협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홍영표 위원** 여기 지금 변주대 씨라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가서 회장하고 있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거기는 한국건설폐기물협회입니다.

○**홍영표 위원** 건설폐기물협회입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 그건 환경부 쪽의 조직이 아닌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등록법인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따로 국비 주는 건 없습니다, 그 쪽에는.

○**홍영표 위원** 거기에는 없고?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홍영표 위원** 그러면 한국폐기물업연합회, 이런 데는 있습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업연합회라는 조직은……

○**홍영표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뭐지요? 한국폐기물협회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한국폐기물협회요.

○**홍영표 위원** 예, 한국폐기물협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홍보, 교육, 컨설팅 같은 걸 하는 협회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홍영표 위원** 여기는 국비지원을 하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국비를 따로 저희가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용역을 응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받아 간 건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한국폐기물협회,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단체들 리스트를 다 쥬 보세요. 그리고 국고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단체들 수도 없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고요. 제가 아까 말씀한 변주대 씨가 하는 한국건설업……

○**환경부장관 유영숙** 건설폐기물협회.

○**홍영표 위원** 나와 보시지요.

건설폐기물협회, 여기도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하던 변주대 씨라는 분이 가 가지고 회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폐기물업연합회가 자기 활동을 위해서 돈을 걷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무슨 3억을 회원사들한테 다 걷어서 아무튼 운영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또 무슨 폐기물업 관련한 공제조합이 있고 거기는 또 전부가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그쪽에서는 다 낙하산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여기 한국건설폐기물협회도 그렇고, 이런 데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작년에 폐기물처리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좀 바꿨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금년에 바꿨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 금년에 바꿨습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홍영표 위원** 아무튼 제가 아마 전임 차관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보면 폐기물처리 적격업체를 당시에 대형업체들이 너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준을

30대, 50대로 완화해 줘라, 저는 이런 것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단체들이 로비스트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일하던 전직 관료가 여기에 가서 거꾸로 자기 연합회를 대변해서 이렇게 정책을 바꿔 달라,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국비지원을 전혀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협회나 이런 단체들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수생태보전협회, 이런 걸 만들어 놓지만 만들어 놓고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또 국고지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보고 한국건설 폐기물협회, 여기도 제가 진작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저는 여기 국고지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국고지원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건 잘못 안 건데요.

아무튼 좀 이런 환경부 산하의 여러 단체들의 활동이나 이것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자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단체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천 위원님 보충토론하십시오.

○강성천 위원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조석준 예.

○강성천 위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타 부처 소관 법과 중복되거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조석준 예, 알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우선 제정안 제6조를 보면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국토부 소관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보면 이미 국토부에서 지구물리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알고 있습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데……

○강성천 위원 예, 잠깐요.

그렇다면 유사한 목적의 관측시설에 대한 기상청과 국토부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약간 성격은 다른데요. 그쪽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지구물리관측하고 기상청 지구물리관측 간에는 목적이나 장소,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례를 보면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도 지구물리관측망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측망이 중복이 되거나 또는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예.

두 번째, 제정안 7조는 지진관측에 대한 정보를 즉시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하지만 행안부 소관의 지진재해대책법 제8조를 보면 기상청이 지진관측정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제정안과 지진재해대책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지진재해대책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정부 내부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정법안은 그 적용대상이 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상법 제13조, 제15조 각각 국민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특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7조에는 자연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결과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모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8조를 보면 기상청은 관련 관측소를 운영하는 타 부처의 기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예, 맞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진 업무에 대해서 타 부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가 예산이 있을 텐데 재정적 지원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조석준** 위원님 말씀처럼 관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지원 체계 등을 감안해서 기술적인 지원으로만 한 정도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재정적 지원을 삭제하고 기술적 지원으로 한정한다고 하는 그 얘기시지요?

○**기상청장 조석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성천 위원** 장관님, 문화일보 11월 14일자 신문을 보면요.

여기 신문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식물 처리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신문기자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 물어보았더니 음식물처리기는 폐자원관리과 소관이라고 미루고 폐자원관리과에 물어보았더니 생활하수과 소관이라고 서로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장관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저도 기사를 보았습니다.

○**강성천 위원** 음식물 쓰레기기에 대한 관리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음식물 처리기기가 불법 유통되고 있고 환경부 공무원의 대응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주방용 오물 분쇄기, 처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처리가 되어서 하천까지 가는 동안에 구분이 있어서 기사에 그렇게 좀 왜곡되게 크게 나온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부에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판매해서 또 오용되는 이런 거라든지 그것이 하수도로 내려가서 하수도 관거가 막히거나 또는 오염이 되거나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지금 현안 사항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불편함 또는 환경의 오염 이런 것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 제10조는 이와 같은 처리기기에 대한 규격과 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하지만 환경부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상충된다는 이유 때문에 처리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다면 처리기기에 대한 규격과 기준을 재활용이 가능한 규격과 기준으로 정하면 전혀 반대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는 일부 규정만 발췌를 해서 또 보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라든지 또 그것을 전체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하수도에 버리게 되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강성천 위원** 지금 제가 쪽 얘기를 했지만 관리법 10조 처리기기 규격하고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별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보고 옆에서 듣지 마시고 장관님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환경부장관 유영숙**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만 잘 시행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라든지 이런 음식물·오물 파쇄기, 분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적법하게 위원님께서 취지하시는 대로 잘 활용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적절하지 않게 다른 곳으로 가서 쓰거나—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이렇게 되면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에 오·폐수가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또 하수관거가 막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 환경부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강성천 위원**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 전제하

에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해야 될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깐 장관님 각 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아마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런 대책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그런 어려움을 야기할 거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시대에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부는 특히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성천 위원** 10조에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류기기에 대한 이 부분이?

○**위원장 김성순** 끝냅시다.

○**강성천 위원** 그만할까요?

○**위원장 김성순** 대체토론은 그냥 대체로 합시다.

또 하시게요?

○**金容九 委員** 예.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구 위원님, 보충토론하십시오.

○**金容九 委員** 폐기물재활용 책임자 나오시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자원순환국장입니다.

○**金容九 委員** 건설폐기물 재활용, 그것은 지금 현재 배출자가 분리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그렇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지금 분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지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容九 委員** 예?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容九 委員** 미흡하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金容九 委員**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제가 정확히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容九 委員** 지금 전체 건설현장에 폐기물이 말이지요, 집을 한 채 짓고 조금하고 또 조그마한 가게 짓고 하는 이게 전체 건설현장의 9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궁하셨지요? 건설 조그마한 데서는 잘 안 되고 있다, 그것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또 하나 말이에요, 동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중간처리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분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중간처리업체 같은 경우는 폐기물 발생된 것을 가져오면 거기서 파쇄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중간단계에서 파쇄처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있다고 그랬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가령 예를 든다면……

○**金容九 委員** 2006년도 5월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관련 규정 및 민원사례집’에서 환경부는 말이지, 분리선별은 중간처리행위가 아니라고…… 환경부에서 나온 답변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왜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위원님, 제가 혹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배출자가 배출하고 나면 가지고 가서 최종처리하기 전에 중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처리를……

○**金容九 委員** 중간처리를 어디서 해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중간처리업체 따로 있습니다.

○**金容九 委員** 지금 중간처리 거기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처리하는 업이 하나…… 처리, 그 중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데 그것을 지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중간처리 거기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

○**金容九 委員** 중간처리업이 필요한 거지요, 선별 중간시설이 필요한 거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위원님, 그런데 배출단계에서 분리배출을 말씀하시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일차 배출된 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분리선별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九 委員** 그런데 문제는 선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배출자가 선별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하면 효율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90%에 해당하는 주택업자나 조그마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나오는 게 20t이 나왔을 경우에 20t 차 하나만 신고 가면 될 일을 다섯…… 지금 배출을 하자면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소각 대상, 목재활용 대상, 매립 대상, 합성수지 재활용 대상, 파쇄용 처리, 이렇게 전부 나누어야 되는데 20t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몇 대 필요해요? 1대 갈 것을 지금 5대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불법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수집을 해서 분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이것은 확실히 할 수 있거든.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비용이 더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의 부담도 없고 비용도 안 올라가. 그러면 이런 제도를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위원님 말씀이 일견 옳습니다마는 각국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해체공사단계에서……

○**金容九 委員** 실장님이시지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국장입니다.

○**金容九 委員** 예, 실장님.

이것을 말이지요. 우선 첫째, 법 제2조(정의)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잘못 해석해서 지금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답변을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2006년 5월 거기의 답변을 보세요. 보시고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최흥진** 예, 그러겠습니다.

○**金容九 委員** 검토를 하세요.

들어가지지요.

○**위원장 김성순** 김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5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22항, 제36항 및 제45항,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대상 법률안이자 보다 심도 있는 안전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일정, 진출인 선정 등 공청회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합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4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예.

○**위원장 김성순**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소관 57건의 법률안을 모두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권영진·조진래·이재선·이한성·현기환·김세연·신성범·권택기·송훈석·손숙미·원희목·안홍준·정진섭·김태원·임해규·손범규·정태근·원희룡·정두언 의원 발의)
-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김성수·윤영·김우남·정해걸·손숙미·정미경·박준선·노철래·이춘식·이사철·원유철 의원 발의)
-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미경·신낙균·김용구·김영록·정동영·조정식·문학진·강창일·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65)
-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윤석·강기정·김영록·김영진·안규백·이찬열·김동철·박기춘·정범구·송민순·전혜숙·강창일·박영선·김유정·최규성·서종표·최인기·노영민·주승용·최재성·백원우·박우순·김희철·김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87)
-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 5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 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 5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김상희 의원 외 82인 발의)
- 5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두아 의원 대표발의)(이두아·이재선·신지호·나성린·조원진·조전혁·신상진·이명수·강용석·구상찬 의원 발의)
- 6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여상규·권영세·유선호·황우여·이한성·윤상현·김금래·김옥이·허원제 의원 발의)
- 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 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배은희·이명규·정두언·박보환·김정권·김무성·이정선·서상기·김학송·손범규·김소남·나성린·현기환·이한성·원희목·권영진·정의화·윤상현·김옥이 의원 발의)
- 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영록·김혜성·송민순·김춘진·장세환·김성곤·유선호·김우남·전혜숙 의원 발의)
- 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신낙균·유선호·양승조·조영택·조정식·이종걸·문학진·홍희덕·유성엽·유원일·김성곤·김재윤·이미경·조배숙·김충조·김부겸·김선동·이낙연·김진애·장세환·신건·박우순·박주선·김영진·서종표·안민석·조승수·권영길·김학재·홍영표·이정희·오제세·강창일 의원 발의)

6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손숙미·김옥이·유성엽·권영진·손범규·이두아·오제세·이정선·조진래·임동규·홍정욱·허태열 의원 발의)

6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발의)(고승덕·강명순·신건·송민순·정수성·정병국·이한성·이인기·배영식·이명수 의원 발의)

6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태원·김소남·강용석·김정권·여상규·신지호·강길부·김학송·손숙미 의원 발의)

7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김호연·이한성·윤석용·박민식·강기갑·정미경·손숙미·이은재·안효대·김유정·김충조·홍정욱·김혜성 의원 발의)

7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이춘석·윤진식·김형오·주광덕·유정현·임해규·강성천·이은재·김호연 의원 발의)

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유선호·강창일·유성엽·백재현·박주선·김진표·김영록·조정대·오제세 의원 발의)

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박영선·이낙연·홍희덕·강기갑·박은수·정장선·조배숙·유선호·최영희·조정식·김상희·

정세균·김진표·홍영표·이춘석·김학재·장세환·김성곤·정동영·안규백·최재성·송민순·서종표·양승조·백재현·장병완·김충조·노영민·김영진·조승수·이찬열·권영진·조영택·원혜영·김진애·권영길·곽정숙·정진섭·강성천·박상천·유원일·손범규·이범관·김성순·김용구 의원 발의)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임두성·유성엽·김정권·손범규·이한성·김충환·고승덕·김성수·윤상현 의원 발의)

7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김학용·김영록·성운환·정해걸·이사철·이철우·김호연·주성영·김우남·나성린·홍일표·김소남·여상규·박보환·김성희·안효대·윤영·유재중·이병석·김성수·차명진·유일호·이화수 의원 발의)

7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이정선·유정현·박준선·김옥이·김용구·정미경·김소남·손범규·신영수 의원 발의)

79.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강성중·강창일·김성곤·김영진·김재윤·박은수·문학진·유선호·유원일·이낙연·이용섭·조정식·전혜숙·추미애·최종원·홍영표·홍희덕 의원 발의)

8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손범규·이화수·김태호·김태환·김소남·이철우·박대해·허천·정옥임 의원 발의)

82.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미경 의원 발의)(이미경 의원 외 86 인 발의)

8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신영수·홍영표·강성천·이정선·이종혁·박대해·이애주·강길부·강석호·안홍준·고승덕 의원 발의)

- 8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성윤환·김창수·변재일·강운태·전병현·김재균·서갑원·김동철·안민석·유성엽·최철국·박은수·김춘진·김상희·김금래·최재성·박선숙·이해봉 의원 발의)
- 8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강성천·손범규·김소남·박준선·장세환·이화수·김금래·김옥이·이정선·황영철 의원 발의)
- 8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최철국·노영민·박주선·김재윤·전병현·김동철·박선숙·양승조·유원일 의원 발의)
- 8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강기갑·곽정숙·권영길·유원일·이미경·이정희·조승수·최문순·홍영표 의원 발의)
- 8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강명순·김호연·김성수·유재중·김성태·최경희·이애주·원희목·이정선·정영희 의원 발의)
- 8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강기정·강창일·김상희·김재균·양승조·이춘석·유선호·유성엽·조영택·최종원 의원 발의)
- 9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전혜숙·김성곤·이해봉·김재윤·유성엽·김효재·김정훈·이인기·고홍길·윤석용·이석현·변웅전·신상진 의원 발의)
- 9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남경필·이한성·이춘식·김선동·손범규·박대해·손숙미·정두언·강용석·김태호·이두아·구상찬·이윤성·김정훈·조진래 의원 발의)
- 9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김우남·강창일·양승조·김종률·홍재형·전병현·이윤석·유성엽·우제창·송민순·강기정·백원우·전현희·전혜숙·김충조·박은수·박기춘·김효재·김영진·김진표 의원 발의)
- 9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장세환·양승조·김충조·김희철·최영희·최문순·곽정숙·김성순·우제창·

- 정하균·이성남·김성곤·김종률 의원 발의)
- 9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김성조·신상진·서상기·이한구·조진형·권경석·허천·이낙연·우윤근·노영민·장윤석·정희수·양정례·김충조·허태열·이한성·강석호·구본철·정의화·정갑윤·김일윤·김학송·안상수·이성현·이인기·김태환·김동성·백성운·정하균·박준선·홍사덕 의원 발의)
- 9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권영길·강기갑·곽정숙·김재윤·김성수·이정희·최문순·문희상·김성곤·송훈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819)
- 9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김동철·안민석·조영택·박영선·김부겸·김영진·오제세·전병현·홍영표·양승조·김재윤·이미경·정동영·이종걸·박기춘·김유정·주승용·김진표·김진애·천정배·문학진·김성곤·이낙연·박은수·이찬열·김재균 의원 발의)
- 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권선택·김성곤·김우남·박선숙·박은수·백재현·송민순·이미경·이석현·이용섭·이찬열·조승수·조영택·최문순 의원 발의)
- 9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강용석·권영진·남경필·서병수·손숙미·원희룡·유기준·이진복·이한성 의원 발의)
- 9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상희·이미경·이정희·정동영·조승수·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88)
- 10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우윤근·이춘식·유선호·박선숙·유원일·홍희덕·박은수·조영택·이찬열·강기갑·김영진·홍영표·원혜영·김상희·주승용·이용경·이낙연·김진애 의원 발의)
- 1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법관·이법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10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발의)(김상희 의원 외 82인 발의)

10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합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김성순**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 김성식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3항까지 이화수 의원, 이주영 의원,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1항까지 김상희 의원, 이두아 의원, 이학재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부터 64항까지 배은희 의원, 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부터 71항까지 손숙미 의원, 고승덕 의원, 권경석 의원, 김소남 의원,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부터 75항까지 김우남 의원, 이주영 의원, 이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78항까지 이성현 의원, 강석호 의원, 강성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

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80항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91항까지 조영택 의원, 강성천 의원, 김재균 의원, 홍희덕 의원, 신상진 의원, 장병완 의원, 이윤성 의원, 남경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2항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3항부터 제101항까지 박은수 의원, 김성조 의원, 홍희덕 의원, 박주선 의원, 김재윤 의원, 박민식 의원, 이미경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2항 및 제103항 김상희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 발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92항을 대표발의하신 송영길 의원은 2010년 5월 13일에 의원직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5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55항, 제56항, 제64항, 제75항 및 제80항 이상 6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존경하는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90일의 산전 후 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유산의 위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휴가를 모든 유산·사산에 대하여 확대하여 임신 초기에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 내용이 이 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설립 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등 4개 사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발급 대상을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 중인 비정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근로자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훈련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외에 훈련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제재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직업훈련 교육의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무급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부담을 덜 느끼면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정한 거부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고 보험급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기 산재환자에게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병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용자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채불 청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의 용자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용자금은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고용노동부장관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5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7건의 검토보고서를 요약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제48항 및 제82항 보험료징수법 개정안과 사회보험료 지원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보험 미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하면서 보험기간을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2항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특례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적용범위의 구체화 가능성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리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64항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정부안은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의 의미가 있으나, 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배우자출산휴가는 3일 유급휴가 의무부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근로복지기본법 정부안 중 부수적인 집행사무의 지방이양은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정부안 중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당연취소사유 축소는 현행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제재처분의 합리적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은 협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나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노사의 협의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심리적 구속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1항까지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신청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할 것인가는 법적 안정성과 권리구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제도의 신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과의 중복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형법 등 다른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정의행위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원까지 채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1항까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승덕 의원안 중 지분소유한도 제한금지는 지배구조가 인증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이윤 재투자 의무비율 등의 완화는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에게 사회공헌보다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조해진 의원안 중 사업보고서 제출주기 단축은 사회적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75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의원안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해보험 당연적용 강화는 관련 단체의 우려와 당연적용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라는 양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안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으로 배분하는 것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현행 산재보험 보상체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안의 과태료 부과·징수의 지방이양은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78항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현 의원안 중 사업장 변경제한 횟수 변경은 고용허가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강성천 의원안 중 재입국 취업제한기간 단축은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이라는 경제적 편익,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은 유통산업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백화점 등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있으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등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법체계의 안정성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영리기업 성격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92항까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년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각 개정안은 중·장년층 등 다른 계층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세제지원 구체화 등 민간기업의 의무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93항부터 제101항까지 최저임금법 개정안 9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적용제도 및 적용제외제도의 폐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최저임금 위원회의 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 최저임금의 국회 심의·의결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직접 참여와 노·사·공익 위원 간의 자유롭고 충분한 논의와 협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사용인의 최저임금법 적용,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근로기준법개정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으며, 1년 미만 기간제인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및 제103항의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중 상용형 파견근로자제도의 신설은 합법적인 장기파견을 인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의 고착화 및 편법운영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고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보면 입법취지인 고용안정도 기대하기 어려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순 전문위원 검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103항까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대체토론에 앞서서 현안질의 한 가지만 장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정리하고 문제로 1년 가까

이 홍역을 치러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환노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얼마 전에 다행스럽게도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꼭 비슷한 사태가 또 지금 대구 KEC라는 사업장에서, 오늘 경향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1면에 보도되었는데요. 그렇게 썩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파업 관련된 노동자들을 모조리 사업장에서 정리하고 시키려는 그 내용이, 그렇게 정리해고를 해서 남는 돈 가지고 임원들하고 관리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하겠다, 이런 기업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무자비한, 부당한 KEC의 정리해고가 자행된다라면 또 극단적인 한진중공업 같은 그런 사태가 번지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으신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KEC에서 경영상 해고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상 해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직까지 노동부에는 신청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노조에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미지청에서…… KEC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갈등도 많이 겪었고, 지난 국감 때 또 인권 탄압에 가까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유린과 관련해서 근로감독도 실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 예의주시 좀 하시고 예방 차원에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가급적이면 노사가 원만히 대화를 통해서 풀어 가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요. 법 위반 사항이 있다 그러면 수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법안 대체토론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제가 좀 있다, 우선 산재보험 관련 과

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인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주가 산재보험 가입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런데요. 이런 것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면 전문성도 없고 또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지금도 사업장에서 산재 관련 기본 사실관계에 대해서 협조 거부라든지 허위 조사 작성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해조사과정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과 집행의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 이양과 관련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장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앞서 말한 산재법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아직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무 일부의 지방 이양 조항들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한다고 균형발전이 잘 되는 거냐, ‘균형발전’이라는 그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사무 지방 이양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우리 김성조 의원님께서 2008년에 발의한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면, 법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도 연장한다,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감액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를 몇 년째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별 임금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 적용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고령자에 대한 감액 적용을 하자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안인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고령층 고용과 복지와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최저임금은 적당히 그냥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금액만큼은 반드시 줘야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내용도 삭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님께서 내신 건데요. 이거는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계속 사용하겠다는 거와 다름 아니다, 그래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내하청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불법파견 문제를 통해 드러난 파견근로자들의 실태는 매우 열악하지요. 그래서 파견기간을 2년 넘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적인 이 법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네 가지 부분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대한 지방 이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게 일부 업무를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방 이양 관련해서 총 20개 기능, 57개 사무에 대한 지방 이양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정부에서는 15개 기능, 34개 사무에 대해서만 지방 이양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산재예방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방 이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만한 사항을 지방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항 위주로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타당성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금년까지 80%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고용이 유지되는 그 전제 위에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파견근로자보호 법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상용형으로 이루어지는 파견의 경우에는 사업장만 바뀔 따름이지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전통적인 모집형이라든지 등록형과 다르기 때문에 그 실태의 차이점을 감안한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연방제를 하고 있고 영토가 넓은 나라의 경우에는 지역별 차등 설정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적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는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법안소위 과정에서 더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좀…… 장관님, KT 계열사 근로감독과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는데 결과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결과 보고를 받으셨으면 간단하게 좀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검토한 후에 다음주 전체회의 때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점검을 일부는 진행했습니다마는 아직 마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홍희덕 위원** 아직도 조사를…… 그러니까 감독을 다 못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해 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라도 이번 주 중으로 보고 못 받으셨으면 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 저도 검토하고 다음주 전체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금까지 점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다가……

○**홍희덕 위원**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미흡해서 제가 추가 지시를 해 냈기 때문에……

○**홍희덕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전체가 끝난 뒤에 보고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희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

강성천 위원님 하십시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 산업의 체불 현황이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

○**강성천 위원** 시간 1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천천히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금년 10월 현재 9083억 정도에 해당됩니다.

○**강성천 위원** 사업장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부분이 경영난이라는 경제적 원인이 크고요. 그다음에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상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체불과 관련해서 노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근로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말씀대로 물론 기업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 임금체불은 다단계 하도급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원인이 계속 지금 근절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렇지만 현행법은 직상수급인에게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강성천 위원** 건설업의 다단계 임금지급 구조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지금 현재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영 의원안 44조 단서조항처럼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원수급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지는 부분이 직상수급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급인이 원인을 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도급 금액을 정해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원자재 공급을 늦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임금체불이 줄지 않는 이유가 사업주의 잘못된 의식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낮은 처벌이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정부안 제43조의2처럼 고의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라든지 금융·신용 제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악덕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11월 현재까지 11명을 구속해서 작년 연간 구속 인원을 육박했고요.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용역, 뭐 각종 물품 구매에 있어서 입찰 심사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또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체불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사전적 예방활동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생각과 같아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토록 하거나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동시에 감독관의 전문성·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을 기함과 아울러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의 체불제로서비스팀 운영도 병행해서 보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성천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프랑스는 14일, 스페인은 15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문화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육아를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역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몫이라는 인식

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이런 노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특히나 남성의 경우에는 가계의 주된 소득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급여 지원이 있다 할지라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데는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봅니다마는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남성이 쓰는 경우가 급속도로 빨리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개정안 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 무급 2일로 하자는 것인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용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직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46.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정책적으로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장관님, 사업주는 시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좀 그런 경향도 일부 사업장에서 있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개정안 19조5항 단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19조5항은 원래가 사업주들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상의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부담스러워서 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인데 단서의 경우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천 위원** 개정안 도입과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 수급액도 점차 인상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장관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사실 육아휴직을 비롯해서 모성보호 관련된 이용자 그리고 예산상의 지원규모가 급속도로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필요한 분들은 활용을 해야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 대책도 함께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강성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현안질의 간단하게 두 개 하고 법안에 대한 토론 한 개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홍희덕 위원님께서 KT 근로자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일차적으로는 조사를 하셨…… 조사는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조사가 이미 있고 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탄압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알려져서…… 또 국회의원실로도 호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의 중간발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왕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미경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혹시 위원님께 제보한 사항을 저희에게 넘겨줄 수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아니요, 지금 정기국회도 끝나고 가고 하면서 시간 질질 끌다가 그냥 끝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자행됐다’라고 의원실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의원실로 보고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쳐서 종합보고를 드렸으면 싶은데……

○이미경 위원 빠른 시일이라는 거는 일주일 안에 마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일주일……

○이미경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끌고 있으면서 그렇게 국회에 와 갖고는 지금 시간 더 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니, 제가 보고를 받다 보면서 좀 미흡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라서……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마치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실무자들 얘기에 의하면 ‘일주일 가지고는 조금 짧은 거 같다’라는 얘기가 때문에 한 열흘 정도로 더 주시면 최대한 조사를 충실히 해서…… 제대로 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경 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조사를 간단하게라도 우선은 의원실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안에는 마쳐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지금 KEC 문제에 대해서 꼭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KEC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미경 위원 그래서 이 지방고용노동청이 다른 관공서들하고 함께 KEC 기업 사 측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만들어서 노조를 파괴하고 친기업 노조를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해고시키고, 이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하고 제가 문서를 공개했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드렸더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본부 차원의 감사를 하라고 해서 본부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래서 장관님, 본부 차원에서 그동안에 조사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수사 말고 우선은 노동부에서 본부 차원의 감사를 하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구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구미 KEC 담당입니다. 그 사람 한 차례 불러 가지고 조사한 것이 끝이에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그토록 제가 문제 제기를,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문제 제기

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장관님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본부 차원의 감사를 시켰는데 단 한 차례, 유착됐다고 생각 하는 사람 불러 가지고 한 차례 물어보고는 끝, 이래 버리고 나서 무슨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온 게 뭐냐 하면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은 실무자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공식 문건이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냥 수사에 맡겨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노동부 차원에서 조사하지도 않고 수사 중이라고, “관공서와 긴밀한 공조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얘기만 한 차례 듣고 끝내 버리는 고용노동부의 행태 때문에 지금 KEC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일어났어요. 오늘 경향신문에도 나고 저도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 11월 10날 KEC가 229명 정리하고 방침을 발표했던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건데 과연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드러난 새 문건은 지금 이 사람들 해고해 가지고 임원들 임금을 좀 더 올려서 고급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원들 임금을 올려 주겠다, 그렇게 한 자료들이 지금 나왔다고요.

파업복귀자 희망퇴직을 유도해서 73억 재원을 마련하고, 현장직 노동자들 임금 삭감해서 42억 재원을 마련하고, 임원과 관리직의 임금을 인상해서 고급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자료가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 국감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나서 노동부가 좀 더 강도 높게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해고 한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이런 문건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동물적으로 부도덕하게 변해 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일터가, 기업 사측이 이런 식으로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놔두는 우리 정부, 노동부는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KT에 대해서도 조사하셨으면 분명하게, 국회도 같이 도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KEC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요새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현장 다니시고 좋은 기사 많이 나는 것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드러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이중적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KEC도 지금 3교대 하고 있는데 2교대로 바꾸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가지고 그때 이어진 것과 더불어서 다시 조사하시고 이런 엉터리 본부 감사했던 담당자 문책하십시오. 이런 엉터리 감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는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이렇게 엉터리 감사하고는 장관님한테 보고하고, 잘돼가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우리 정부가 불신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에 대해서 잠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주영 의원님이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셨고 오늘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주영 의원안에 따르면 상용형 파견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 놓고 현행 2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 직접 고용의무가 주어지는 파견과 달리 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 파견 형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데 왜 이런 내용을 냈는지 하는 것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상용형 파견은 일본의 상용고용형 파견제를 가져온 건데 이미 일본에서도 상용고용형 파견제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서 다시 되돌려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급증한 파견근로자의 대량해고, 위장도급 등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제조업 파견에서 상용고용형 파견을 제외하고 금지하는 등 파견제도를 엄격하게 해야지 된다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패한 이 제도를 우리가 다시 답습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파견근로자들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간접고용하에서는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기가 힘들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고 비정규노조 조직률이 1.7%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일자리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것인가, 조금 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일자리 나누기를 어떻게 하고 노동시간을 줄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보다 더 집중해 주시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셔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시고 홍영표 위원, 토론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KEC와 관련해서 부당노동행위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용형 파견의 경우에는 성격상 등록형파견이나 모집형파견과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파견을 하되 다만 사업장만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숙련의 형성이라든지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노사가 원할 경우에는 등록형·모집형과 달리 처우함이 옳다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그냥 방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과의 비교 부분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네거티브(negative)시스템으로 해서 규제를 풀었다가 문제를 고쳐 나가기 위해서 조금씩 묶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포지티브(positive)시스템으로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지나치게 단기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고민의 출발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홍영표 위원** 민주당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

입니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관련해서 관계법 개정안이 사실 또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도 못 했습니다. 지금 노동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노조전임자의 임금 문제하고 또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이것은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지난번에 날치기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중에서 연장근로 특례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제59조를 보면 연장근로 특례업종의 연장근로시간이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노사 간에 합의만 되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대상을 보면 연장근로 특례업종의 종사자가 전체의 48.6%라고 합니다. 아무튼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2명 중에 1명이 연장근로 특례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를 1주 40시간, 그리고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법이 사실 무력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장시간이고 또 정말 불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방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익이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시는 것은 모아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리하고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과 분쟁 또 사회적인 논란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리해고가 아주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일어난다기보다 지금은 구조조정의 한 수단으로서 법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을 비롯해서, 이

게 대표적인 사업장입니다마는 사용자들이 정리해고를 악용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몰아내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낸 정리해고법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또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대한 회피하는 노력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전직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알아봐 준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사용주의 책임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안을 제출할 때는 프랑스·독일·영국 이런 노동 선진국의 정리해고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현실을 반영해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했는데 아마 노동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와 같은 이런 문제를 두고서는 우리 노동현장에서의 평화도 기대하기 힘들고 또 우리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해고에 대해서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정리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장관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다 드렸고요, 필요하신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연장근로특별업종 부분은 이 사항이 1961년도에 근로기준법에 담기면서 50년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아주 특이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40%가 넘는 근로자가 해당 대상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특별개선위원회를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중에 있고 금년 연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법안에 담았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그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외국의 사례도 참조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리해고와 관련된 실제적 요건, 절차적 요건 중에서 실제적 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엄격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경제질서 법체계의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로써만 묶는다고 해서 취지가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리해고 남용을 결코 그냥 방관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해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장관님, 의사일정 47항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하면 재정소요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감당할 만한 규모라고 보시는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47항……

○**조해진 위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부담은 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임금 수준별로 선택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해진 위원** 이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130% 이하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 47항입니까?

○**조해진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제가 다른 호수를 봤습니다.

47항 안에 의하면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 사회보험 가입이 현저하게 낮은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조해진 위원** 저는 그대로 하면 물론 당연히 근로자들이나 저임금근로자들하고 또 사업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요,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조금 더 작은 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느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부하고 우리 소위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소위에서 사중손실 효과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30인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사회

보험 가입률이 한 69% 정도 됩니다마는 5인 미만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은 5인 미만 규모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예.

그다음에 의사일정 66항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기간 중에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을 사용자가 직접 채용하지 못하게 규정이 들어가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경비원들이 쟁의과정에서 쟁의 근로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든지 노조활동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그런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 사항들은 기존에 형법에도 폭행을 한다든지 하면 제재조항이 있고 또 노동조합법에도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벌칙규정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조항들을 잘 활용하면 되지 굳이 새로운 안으로 개정안을 내야 될 사항은 좀 아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해당 피해근로자나 노조에서 고발할 거고 법원에서 그건 응당 그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것보다는 사용자 측에서 오히려 합법적인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결과가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법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건 현행법으로도 허용 안 되고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업체 소속 경비원들은 일정한, 보니까 금고 이상 실형 받은 뒤에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거기에 취업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은 못 하게 하고 나머지 그러면 결국은 그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 경비원들을 고용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오히려 거꾸로 문제 많은, 검증되지 않은 경비원들을 노조 쟁의활동 앞에 세우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좀 문제 있는 집단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경비업법상의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자면 검증된 사람이 채용되는 기회를 오히려 막고 그런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문제 인물들을 채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해진 위원** 예, 역효과, 오히려 거꾸로의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개정안대로 하면.

○**조해진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이것까지는 감안이 됐는가 싶고요, 개정안 제출 때. 그래서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 부분이 좀 심층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예,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73항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지금은 사유를 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해 가지고 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적용제외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의무가입하게 하는 건데 특고근로자들한테는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들은 이것 반대한다고, 생활설계사들도 반대하고 레미콘 차주들도 반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마 제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회사에서 민간보험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률이 8.9%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원칙에 해당되는 적용이 너무나 적고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90% 이상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상 사회보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원칙 적용 예외적으로 사정이 있을 때 제외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해야만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보험료 부담에 대한 측면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50% 부담하고 사업주도 50% 부담하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측면들이 감안된 것 같고요.

그러나 사회보험은 보험의 범위가 좀 더 넓고 보장성이 강하고 장기 연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잘 알도록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에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김상희 의원님 발의 내용은 파견근로자 2년 초과 근무했을 때 고용의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고용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건데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걸 의제를 하는 건데 이것 역시 취지대로 하면 파견근로자들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까, 그게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게 일용 고용의 제로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마는 그것을 사업주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직접고용 의무형태로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의무를 이행하게끔 촉진시킬 수가 있고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히려 고용의제보다는 직접고용의무와 과태료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이 우리 파견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2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나기 전에 의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2년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 버리고 또 다른 형태로 간다든지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용이 되도록 그 사업주들이 다 받아들일 때 이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의제 관계가 설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2년 되기 전에 다른 계약해지를 한 다든지, 이래 버리면 오히려 더 못한 결과도 될 수 있고, 지난번에 최저임금법 감단근로자들 경우처럼…… 그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에 있어서 그 취지대로 될 것인지 거꾸로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원래가 고용의제제도로 운영을 하다가 현실성이 없다라는 경험의 결과로……

○**조해진 위원** 한번 시행을 해 봤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제도로 바꾼 사항입니다.

○**조해진 위원** 언제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원래 파견법을 만들어서 시행한 초기에 98년부터 의제제도로 해 왔는데 현실성이 없었다 해서 의무제도로 바꾼 사항입니다.

○**조해진 위원** 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상황까지 고려해서 하여튼 정부에서 그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었을 때 결과를 면밀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입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57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79항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대상 법률이자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일정, 진출인 선정 등 공청회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1건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5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쪽 의석이 한 분만 빼놓고 무인지경(無人之境)입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 성 천	김 성 순	김 용 구	손 범 규
신 낙 균	이 미 경	이 범 관	이 정 선
정 진 섭	조 해 진	홍 영 표	홍 희 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천 병 호
전 문 위 원	원 창 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유	영	숙
차	관	윤	중	수
기 획 조 정 실 장		정	연	만
물 환 경 정 책 국 장		이	정	섭
상 하 수 도 정 책 관		오	중	극
녹 색 환 경 정 책 관		이	찬	희
기 후 대 기 정 책 관		이	재	현
자 연 보 전 국 장		백	규	석
자 원 순 환 국 장		최	홍	진
기 상 청				
청	장	조	석	준
기 획 조 정 관		이	일	수
지 진 관 리 관		김	영	진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채	필
차	관	이	기	권
기 획 조 정 실 장		전	운	배
고 용 정 책 실 장		이	재	갑
노 동 정 책 실 장		조	재	정
인 력 수 급 정 책 관		한	창	훈
직 업 능 력 정 책 관		하	미	용
고 용 평 등 정 책 관		권	영	순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나	영	돈
근 로 개 선 정 책 관		박	중	길
산 재 예 방 보 상 정 책 관		문	기	섭
노 사 협 력 정 책 관		권	혁	태
정 책 기 획 관		신	기	창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사 무 처 장		김	윤	배

【보고사항】

○의안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 이미경·박영선·이낙연·홍희덕·강기갑·박은수·정장선·조배숙·유선호·최영희·조정식·김상희·정세균·김진표·홍영표·이춘석·김학재·장세환·김성곤·정동영·안규백·최재성·송민순·서종표·양승조·백재현·장병완·김충조·노영민·김영진·조승수·이찬열·권영진·조영택·원혜영·김진애·권영길·곽정숙·정진섭·손범규·이범관·김성순·김용구 의원 발의)
11월 2일 회부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안(李玲愛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 李玲愛·김혜성·변용전·김을동·김용구·임영호·정영희·박준선·조전혁·송영선·김정 의원 발의)
11월 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1. 11. 4 홍영표·이미경·신낙균·김용구·김영록·정동영·조정식·문학진·강창일·김영진 의원 발의)
11월 7일 회부됨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11. 8 이미경·강성중·강창일·김성곤·김영진·김재운·박은수·문학진·유선호·유원일·이낙연·이용섭·조정식·전혜숙·추미애·최종원·홍영표·홍희덕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1. 11. 8 신학용·조배숙·유선호·김학송·홍일표·이낙연·백재현·김영환·최종원·권성동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

(2011. 11. 8 최종원·장병완·전현희·이낙연·김재균·신학용·유선호·강창일·박우순·김부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9일 회부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1. 11. 9 이학재 · 이윤성 · 윤상현 · 홍일표 ·
조전혁 · 이경재 · 신건 · 조문환 · 노철래 ·
이정선 · 이명규 · 정영희 · 홍사덕 · 김세연 ·
정희수 · 서상기 · 유정복 · 권영진 · 조원진 ·
박상은 의원 발의)

11월 10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1. 10 정부 제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0 전현희 · 백원우 · 주승용 · 장세환 ·
박기춘 · 김효석 · 최영희 · 박은수 · 조영택 ·
안홍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1일 회부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5 홍영표 · 신낙균 · 강창일 · 김영진 ·
김용구 · 정동영 · 박주선 · 김동철 · 노영민 ·
송훈석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5 이정선 · 손범규 · 원희룡 · 정진섭 ·
정병국 · 이범관 · 강성천 · 김성순 · 김용구 ·
박대해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6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2011. 11. 17 홍영표 · 이윤석 · 강기정 · 김영록 ·
김영진 · 안규백 · 이찬열 · 김동철 · 박기춘 ·
정범구 · 송민순 · 전해숙 · 강창일 · 박영선 ·
김유정 · 최규성 · 서종표 · 최인기 · 노영민 ·
주승용 · 최재성 · 백원우 · 박우순 · 김희철 ·
김재윤 의원 발의)

11월 18일 회부됨